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경택 의원 대표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008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송경택, 강석주, 김길영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종길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박칠성, 박환희, 서상열, 소영철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배, 이종태, 임춘대, 장태용, 정준호, 정지웅, 최민규, 최유희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4명)

1. 제안이유

-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.
- 행정안전부에서도 소송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대통령령 제33159호)을 개정할 바 있음(2022.12.27.)
- 서울 시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규정 등을 신설(안 제7조의2).
- 나.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신설(안 제8조제2항제5호).
- 다. 민간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(안 제13조제5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”을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 제1항에 따라”를 “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5조의2에 따라”로 하고, “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”를 “수립·시행할 수 있다.”로 하며, 제2항 중 “포함한다.”를 “포함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제2항제4호 중 “영 제5조에”를 “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에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표창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”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공무원(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

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

1.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

2.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·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

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(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)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영 제10조제1항에”를 “법 제75조의2제2항에”로 하고,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공무원(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)이 제7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

제11조제3항중 “제13조 제2호부터 제3호에”를 “제13조제2호부터 제3호에”로 한다.

제13조제1호 중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”를 “심신장애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5조 중 “간사1명을 두되”를 “간사 1명을 두되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영 제18조, 제19를”를 “영 제18조와 제19조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</u>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--- <u>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</u>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----- <u>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<u>포함한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 4. <u>영 제5조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5. ~ 6. (생략) ③ ~ ④ (생략)</p> <p>제7조(적극행정 포상 등) ----- -----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--- <u>「지방공무원법」</u>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5조의2에 따라 ----- ----- <u>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<u>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</u>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조에 ----- ----- -----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적극행정 포상 등) ----- -----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----- ----- 「서울특별 시 표창조례」----- <신 설></p> | <p>----- ----- 「서울특별 시 표창 조례」----- 제7조의2(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 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. ② 시장은 공무원(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 1.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.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·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(퇴직한 공무 원을 포함한다)이 적극행정 추진 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제8조(적극행정위원회) ① <u>영 제10조 제1항에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생략) 1. ~ 4.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11조(위원의 임기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제13조 제2호부터 제3호에</u> ---- ----- -----.</p> <p>제13조(위원의 해촉) (생략) 1. <u>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</u>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~ 4.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제15조(간사) ----- ----- 간사1명을 두되,</p> | <p><u>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제8조(적극행정위원회) ① <u>법 제75조의2제2항에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공무원(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) 이 제7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</u>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위원의 임기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제13조제2호부터 제3호에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3조(위원의 해촉) (현행과 같음) 1. <u>심신장애로</u> -----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</u></p> <p>제15조(간사) ----- ----- 간사 1명을 두되,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----- -----.</p> <p>제19조(준용규정)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, 징계 요구 면책, 징계 등 면제,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고,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에 관련된 사항은 <u>영 제18조, 제19</u>를 -----.</p> | <p>----- -----.</p> <p>제19조(준용규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영 제18조와 제19조를 -----.</p> |